

의안번호	제 23 호
의결 연월일	2003. . .

의
결
사
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 연월일	2003. 7. 1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	----

제출년월일	2003.7.15
제출자	사천시장

1. 제안사유

- 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시중 금리보다 높게 적용된 공유재산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 인하 조정으로 주민 부담 경감(안 제21조)
- (1)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이자 ⇒ 4%
(안 제21조제1항, 공공 목적용 매각)
- (2)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 ⇒ 6%
(안 제21조제2항, 성질상 수익계약 불가피한 재산 매각)
- (3)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 ⇒ 6%
(안 제21조제3항, 실 수요자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 매각)
-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내용(연5% ~ 8% → 연4%~6%)을 조례 반영

나.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내용중에 다음사항을 반영함(안 제23조)

-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다. 연체료 부과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 경감
(안 제28조)

-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종전의 무기한 부과 → 60월까지로 개정)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35조(시의회 의결사항)

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행정자치부

4. 주요토의 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없음

라. 기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 예고

가) 입법예고 기간 : 2003. 5. 28 ~ 6. 1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게시 공고

(3) 심의 및 시의회 의결

(4) 도 보고 및 공포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0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1조제1항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22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 ③(생략) <u>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3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조건으로 붙여야 한다.</u> 1.~8. (생략) <신설></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u>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6. (생략)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3. (생략)</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 ③(현행과 같음) <u>④ <삭제></u></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명시하여야 한다.</u> 1.~8. (현행과 같음) <u>9. 허가조건</u></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 연 4퍼 <u>센트</u>-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연 6퍼센트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생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u>세입세출예산외 현금</u>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u>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③(생략)</p>	<p>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 - - - <u>세입세출외 현금</u>- - - - -</p> <p>⑤(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 - - <u>교환차액을</u> - - - - -</p> <p>- - - - -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 - - -</p> <p>- - - - - <u>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u>- - - - -</p> <p>②·③(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7조(의회의결의 신청범위)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의 의회 의결 신청은 중요 재산에 한한다.</p> <p>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③(생략)</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각 호에 의한다.</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u>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백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5.(생략)</p> <p>⑤·⑥ (생략)</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p> <p>-----</p> <p>-----</p> <p>-----</p> <p>-----</p> <p>-----</p> <p>-----</p> <p>-----</p> <p>제37조<삭 제></p> <p>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u> -----</p> <p>-----</p> <p>-----</p> <p>-----</p> <p>-----</p> <p>2.~5.(현행과 같음)</p> <p>⑤·⑥(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신 설 ></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p> <p>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p> <p>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p>